

# **검 토 보 고 서**

2010 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 
-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

( 2011. 6. 29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[ 전문위원 명 금 길 ]

## **1. 안 건 명**

2010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결산, 예비비 지출 및  
기금결산 승인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2011년 6월 13일

## **4. 근거법령**

가.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(결산승인)

나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

다.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

라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## 2010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·세출결산,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

-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,82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7,252만 7,410원이 지출되었고, 예산현액 대비 약 12.99%에 해당하는 2,576만 7,5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, 전년도의 8.4%와 대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에 있어서 4.59%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집행잔액에 의한 것이며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7.94%에 해당하는 1,574만 4,610원, 일반보상금에서 예산현액 대비 1%에 해당하는 200만원, 기타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3.12%에 해당하는 61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신고대상자가 없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는 휴직 및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